

가정상담

8 2021
통권 456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지난 7월 20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 이사진에 대한
유임안을 의결하였다. (관련 기사 32면)



2021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관련 기사 32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통계 분석
- 14 • 특집 ❷ | 202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②
- 20 • 가정폭력상담실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③7
- 25 • 좋은 책
레몬
- 26 • 어떻게 할까요
- 28 • 결혼과 인생(220) 영화 이야기
스왈로우 _ 김용언
- 30 • 실습소감문
-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4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해바라기〉



한국 사회, 지금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②

사회적 양극화의 그늘과 갈등으로 얼룩지는 가정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도,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에도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그 시대의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보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또 어떤가요? 혹자는 화성과 금성의 거리만큼 본질적으로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성별과 세대로 구성되고 이들이 구성하는 가정 또한 그러하며 이러한 차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지금의 2, 30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부유하게 자랐으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게 될 첫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고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가정의 모습 또한 비슷합니다.

이렇듯 우리 가정은 모순과 역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현실이 사회에 투영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모순 또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의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며 동시에 가정에도 심각한 여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의 가장 중요한 쟁점 두 가지는 코로나와 부동산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아래에도 부동산은 곳곳에 벼락부자와 자칭 벼락거지를 양산하고 있고 사회 전체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갈등은 그대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 때 왜 집을 못 사게 해서’ 아내 혹은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다는 상담도 있고, 부유한 이들이 각종 절세를 도모하고 또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부동산을 상속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며 이런 저런 이유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현실에 갈 길을 잃은 자영업의 현실은 더 많은 가정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는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며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와 직장으로 가족들을 보내고 일상을 준비 하던 가정에서 주부들은 남편과 자녀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탓에 ‘밥의 노예’가 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 중인 남편이 그 현실을 버거워하는 아내와 극단적인 마찰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상의 변화는 이렇듯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우리들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 코로나19가 수면으로 끌어 올려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위기는 결국 또 다른 모습의 가정의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절벽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니 사회는 늙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가능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국가의 정책 나아가 정치에 있음을 국민들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우리 사회가 살 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만한 곳,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울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극심한 무더위로 쉽지 않은 여름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우리 사회와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통계 분석(2011.3 ~ 2020.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10여 년 간 총 73,432건의 상담 진행, 이혼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1. 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1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 두 개의 상담실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인들의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2011년 3월 14일 본 상담소 박배희 소장과 당시 서울가정법원 김용현 원장 간에 전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법률상담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면서 본 상담소에서는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상담을 좀더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상담실 1개소를 추가로 오픈하여 상담을 확대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2개소의 출장상담실에서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본 상담은 상담소에 속해 있는 상담위원과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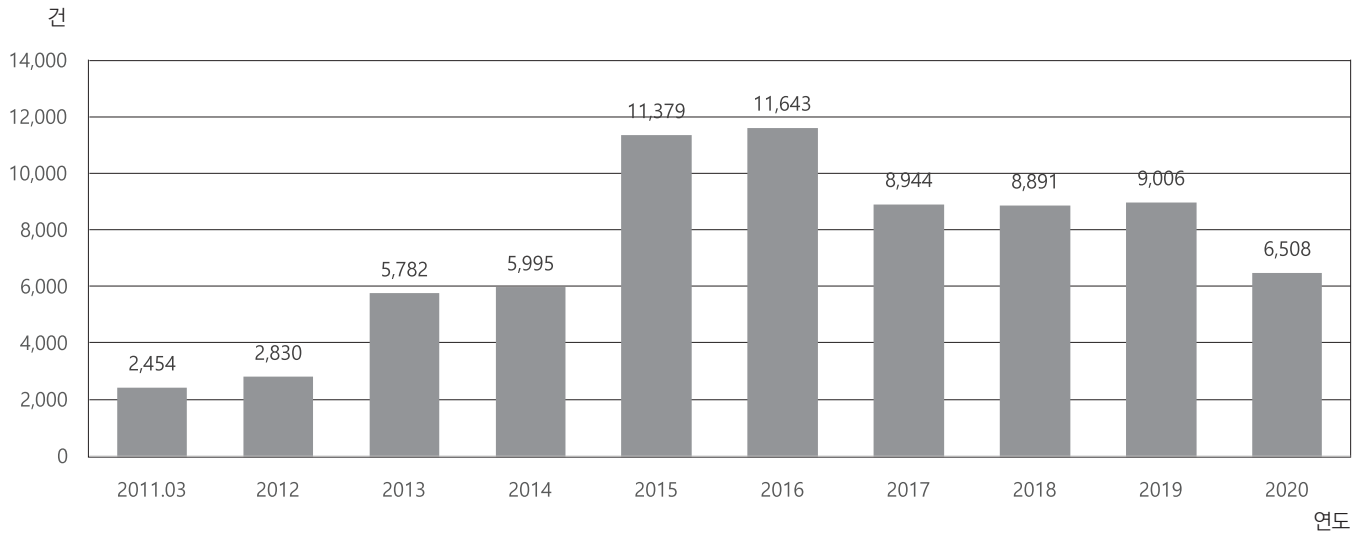
제로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총 73,432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2. 연도별 상담건수

시작 첫 해인 2011년에는 상담건수가 2,454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830건, 2013년에는 5,781건, 2014년에는 5,99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원인들의 상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을 추가 오픈한 2015년에는 11,379건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1,643건, 2017년에는 8,944건, 2018년에는 8,891건, 2019년에는 9,006건, 2020년에는 6,508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연간 1만여 건 내외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월평균 628명의 민원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연도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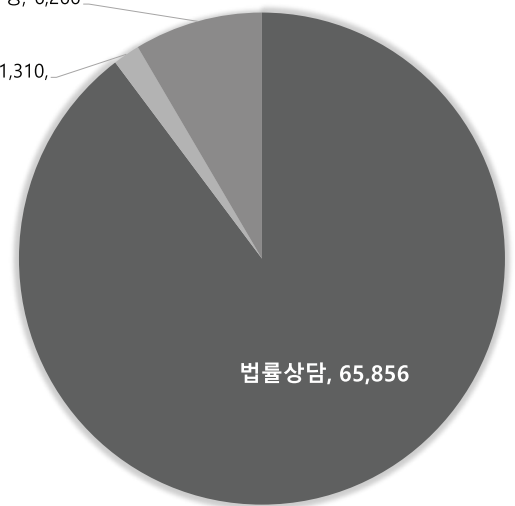


〈 연도별 상담건수 분석표 〉

연도	총건수	월평균
2011/3	2,454	273
2012	2,830	236
2013	5,782	482
2014	5,995	500
2015	11,379	948
2016	11,643	970
2017	8,944	745
2018	8,891	741
2019	9,006	751
2020	6,508	542
합계	73,432	628

소장 등 서류작성, 6,266

화해조정, 1,310



처리방법별

3. 사건처리별 상담건수

상담소에서 파견한 상담위원과 변호사는 내담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법률상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문제를 중재함으로써 화해조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상담 결과 내담자가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무료로 변론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송구조 안내서류를 배부하고 본 상담소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처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상담을 처리방법별로 살펴보면, 총 73,432건 중 법률상담은 65,856건(89.7%)이었다. 한편,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를 하여 부부문제나 가족 문제의 당사자들이 대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화해조정은 1,310건(1.8%)이었다.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민원인들에게 소장, 답변서, 보정서, 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한 경우도 6,266건(8.5%)에 달했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여의도에 위치한 본 상담소 전체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62,997건이었고, 그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696건으로 1.1%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간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총 73,432건 중 6,266건으로 8.5%를 차지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의 경우 서류 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방법별 분석표 〉

처리방법	총건수	%
법률상담	65,856	89.7
화해조정	1,310	1.8
소장 등 서류작성	6,266	8.5
합계	73,432	100.0

4. 사건내용별 상담건수

상담건수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73,432건 중 22,351건(30.4%)에 달했다. 다음은 유언·상속(13,464건, 18.3%), 성년후견(4,898건, 6.7%), 가사기타(3,587건, 4.9%), 가족관계등록부(3,548건, 4.8%), 친생자관계존부(3,481건, 4.7%), 위자료·재산분할(3,470건, 4.7%), 가사절차(3,462건, 4.7%), 양육비(2,200건, 3.0%), 친권·양육권(2,029건, 2.8%), 입양(1,466건, 2.0%), 성변경(1,435건, 2.0%), 개명(1,060건, 1.4%), 면접교섭권(780건, 1.1%) 순이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43,903건 중 이혼이 14,485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언·상속(7,332건, 16.7%), 성년후견(2,749건, 6.3%), 위자료·재산분할(2,282건, 5.2%), 친생자관계존부(2,140건, 4.9%), 가사절차(2,019건, 4.6%), 가사기타(2,015건, 4.6%), 가족관계등록부(1,792건, 4.1%), 양육비(1,559건, 3.5%), 친권·양육권(1,281건, 2.9%), 성변경(1,040건, 2.4%), 개명(727건, 1.7%), 입양(599건, 1.4%), 미성년후견(403건, 0.9%) 순이었다.

남성은 총 29,529건 중 이혼이 7,866건(2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언·상속(6,132건, 20.8%), 성년후견(2,149건, 7.3%), 가족관계등록부(1,756건, 5.9%), 가사기타(1,572건, 5.3%), 가사절차(1,443건, 4.9%), 친생자관계존부(1,341건, 4.6%), 위자료·재산분할(1,188건, 4.0%), 입양(867건, 3.0%), 친권·양육권(748건, 2.5%), 양육비(641건, 2.2%), 혼인무효·취소(443건, 1.5%), 성변경(395건, 1.3%), 면접교섭권(378건, 1.3%) 순이었다.

남녀 모두 이혼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내담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하였다. 아울러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이혼 자체에 관한 상담이 많은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산정 방법,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유언·상속 관련해서는 피상속인(망자)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상속인의 범위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불가능한 부모, 자녀, 형제의 법률행위 관련한 성년후견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권자, 후견인 자격, 심판절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성 별 사 건 내 용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 (명)	백분율 (%)	사건수 (명)	백분율 (%)	사건수 (명)	백분율 (%)
가 사 71,904건 (97.9%)	남녀관계	42	0.1	9	0.0	51	0.1
	파 혼	5	0.0	4	0.0	9	0.0
	부부갈등	273	0.6	151	0.5	424	0.6
	이 혼	14,485	33.0	7,866	26.6	22,351	30.4
	사실혼해소	158	0.4	83	0.3	241	0.3
	위자료·재산분할	2,282	5.2	1,188	4.0	3,470	4.7
	친권·양육권	1,281	2.9	748	2.5	2,029	2.8
	양육비	1,559	3.5	641	2.2	2,200	3.0
	면접교섭권	402	0.9	378	1.3	780	1.1
	인 지	165	0.4	174	0.6	339	0.5
	친생부인	384	0.9	169	0.6	553	0.8
	친생자관계존부	2,140	4.9	1,341	4.6	3,481	4.7
	입양	599	1.4	867	3.0	1,466	2.0
	파양	203	0.5	225	0.8	428	0.6
	친양자	272	0.6	342	1.2	614	0.8
	혼인무효·취소	328	0.7	443	1.5	771	1.0
	이혼무효·취소	29	0.1	22	0.1	51	0.1
	부양관계	308	0.7	250	0.8	558	0.8
	유언·상속	7,332	16.7	6,132	20.8	13,464	18.3
	가족관계등록부	1,792	4.1	1,756	5.9	3,548	4.8
	성변경	1,040	2.4	395	1.3	1,435	2.0
	개명	727	1.7	333	1.1	1,060	1.4
	미성년후견	403	0.9	231	0.8	634	0.9
	성년후견	2,749	6.3	2,149	7.3	4,898	6.7
	가사절차	2,019	4.6	1,443	4.9	3,462	4.7
	기타	2,015	4.6	1,572	5.3	3,587	4.9
민 사 1,287건 (1.8%)	임대차	23	0.0	28	0.1	51	0.1
	부동산	49	0.1	34	0.1	83	0.1
	채권·채무	217	0.5	114	0.4	331	0.5
	파산	95	0.2	75	0.3	170	0.2
	개인회생	7	0.0	11	0.0	18	0.0
	민사절차	58	0.1	39	0.1	97	0.1
	민사기타	326	0.7	211	0.7	537	0.7
형 사 241건 (0.3%)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10	0.0	6	0.0	16	0.0
	성폭행	5	0.0	4	0.0	9	0.0
	성매매	2	0.0	-	-	2	0.0
	형사절차	27	0.1	22	0.1	49	0.1
	형사기타	92	0.2	73	0.2	165	0.2
합 계		43,903	100.0	29,529	100.0	73,4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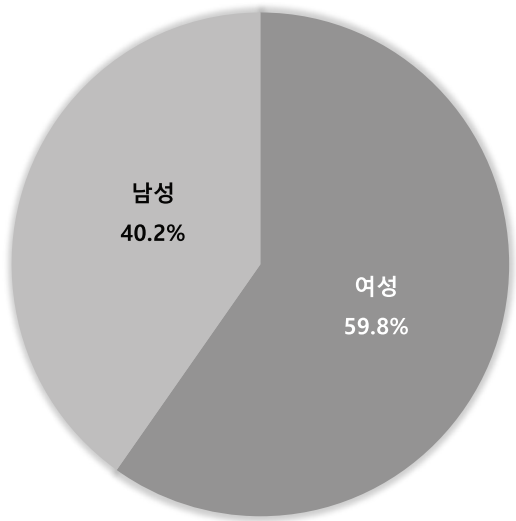
차, 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고, 이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사무 보고,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여의도에 위치한 본 상담소 전체에서 진행한 면접상담 역시 이혼이 2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다음으로는 부부갈등이 16.7%를 차지해 서울가정법원 내 종합민원실 상담과 차이를 보였다. 본부의 면접상담 중 부부갈등 상담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법원에 찾아가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내담자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부갈등 상담은 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으나 부부 간 갈등과 마찰로 인해 불화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담자들이 갈등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갈등이 심화되기 전 문제가 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혼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상담소는 갈등 중인 내담자에게는 깊이 있는 상담과 여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소송을 결심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최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내담자 특성별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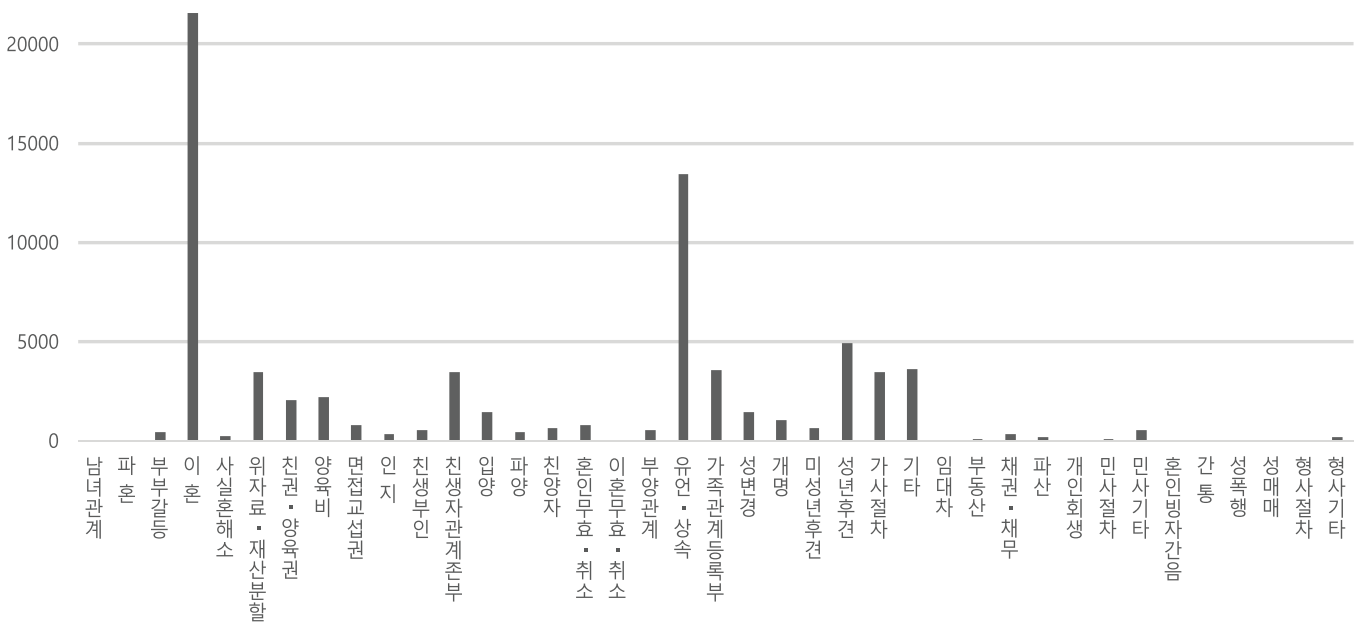
1) 남녀별

여 성 : 43,903 명(59.8%)
 남 성 : 29,529 명(40.2%)
 합 계 : 73,432 명(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43,903명(59.8%), 남성이 29,529명(40.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다.

사건내용별



〈 연령별 분석표 〉

연령 \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 대	240	0.5	220	0.7	460	0.6
20 대	1,932	4.4	1,152	3.9	3,084	4.2
30 대	6,444	14.7	3,766	12.8	10,210	13.9
40 대	12,185	27.7	7,529	25.5	19,714	26.9
50 대	11,132	25.4	6,673	22.6	17,805	24.2
60대 이상	11,893	27.1	10,131	34.3	22,024	30.0
미 상	77	0.2	58	0.2	135	0.2
합 계	43,903	100.0	29,529	100.0	73,432	100.0

2)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40대가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 이상(27.1%), 50대(25.4%), 30대(14.7%), 20대(4.4%), 10대(0.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25.5%), 50대(22.6%), 30대(12.8%), 20대(3.9%), 10대(0.7%)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3) 교육정도별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은 고졸이 2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졸(13.0%), 중졸(5.2%), 초졸(3.6%), 전문대졸(1.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고졸이 1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졸(16.4%), 중졸(4.7%), 초졸(3.1%), 전문대졸(1.4%)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도별 분석표 〉

성별 \ 학력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무 학	185	0.4	92	0.3	277	0.4
초 재	26	0.1	17	0.1	43	0.1
초 중 퇴	126	0.3	64	0.2	190	0.3
초 졸	1,596	3.6	930	3.1	2,526	3.4
중 재	25	0.1	17	0.1	42	0.1
중 중 퇴	90	0.2	82	0.3	172	0.2
중 졸	2,265	5.2	1,402	4.7	3,667	5.0
고 재	64	0.2	45	0.2	109	0.1
고 중 퇴	228	0.5	127	0.4	355	0.5
고 졸	9,093	20.7	5,273	17.9	14,366	19.6
대 재	229	0.5	237	0.8	466	0.6
대 중 퇴	191	0.4	185	0.6	376	0.5
전문대졸	631	1.4	401	1.4	1,032	1.4
대 졸	5,714	13.0	4,848	16.4	10,562	14.4
대학원재	69	0.2	24	0.1	93	0.1
대학원졸	628	1.4	485	1.6	1,113	1.5
미 상	22,743	51.8	15,300	51.8	38,043	51.8
합 계	43,903	100.0	29,529	100.0	73,432	100.0

4) 직업별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2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회사원(6.0%), 단순노무(4.3%), 자영업(3.3%), 무

직(2.9%), 기타(2.4%), 교육직(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은 회사원이 1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직(9.9%), 자영업(8.6%), 단순노무(4.0%), 기타(1.7%), 기술직(1.6%), 운전(1.2%) 순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분석표 〉

성 별 직 업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9,031	20.6	79	0.3	9,110	12.4
회사원	2,628	6.0	3,460	11.7	6,088	8.3
단순노무	1,892	4.3	1,180	4.0	3,072	4.2
자영업	1,450	3.3	2,548	8.6	3,998	5.4
공무원	116	0.3	114	0.4	230	0.3
경 찰	0	0.0	3	0.0	3	0.0
군 인	3	0.0	54	0.2	57	0.1
교육직	488	1.1	168	0.6	656	0.9
전문직	136	0.3	128	0.4	264	0.4
운 전	19	0.0	364	1.2	383	0.5
세일즈	323	0.7	91	0.3	414	0.6
학 생	375	0.8	317	1.1	692	0.9
간호사	146	0.3	3	0.0	149	0.2
약 사	7	0.0	11	0.0	18	0.0
의 사	25	0.1	31	0.1	56	0.1
한의사	6	0.0	1	0.0	7	0.0
농수산임목	28	0.1	157	0.5	185	0.3
예술인	35	0.1	29	0.1	64	0.1
종교인	31	0.1	49	0.2	80	0.1
법조인	4	0.0	6	0.0	10	0.0
기술직	211	0.5	471	1.6	682	0.9
무 직	1,278	2.9	2,915	9.9	4,193	5.7
기 타	1,035	2.4	498	1.7	1,533	2.1
미 상	24,636	56.1	16,852	57.1	41,488	56.5
합 계	43,903	100.0	29,529	100.0	73,432	100.0

〈 경제상태별 분석표 〉

성 별 직 업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30만원 이하	67	0.2	67	0.2	134	0.2
31 ~ 100만원 이하	1,370	3.1	558	1.9	1,928	2.6
101 ~ 200만원 이하	3,027	6.9	1,874	6.4	4,901	6.7
201 ~ 300만원 이하	1,055	2.4	2,022	6.8	3,077	4.2
301 ~ 500만원 이하	598	1.4	1,342	4.5	1,940	2.6
501만원 이상	193	0.4	399	1.4	592	0.8
무 · 미 상	37,593	85.6	23,267	78.8	60,860	82.9
합 계	43,903	100.0	29,529	100.0	73,432	100.0

5) 경제상태별

내담자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소득이 없거나 미상인 경우(여 85.6%, 남 78.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성은 101~200만원 이하(6.9%), 31~100만원 이하(3.1%), 201~300만원 이하(2.4%), 301~500만원 이하(1.4%), 501만원 이상(0.4%), 30만원 이하(0.2%) 순으로, 남성은 201~300만원 이하(6.8%), 101~200만원 이하(6.4%), 301~500만원 이하(4.5%), 31~100만원 이하(1.9%), 501만원 이상(1.4%), 30만원 이하(0.2%) 순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절하고 다양한 차원의 해결방법을 안내해 민원인들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음으로써 법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가정법원 민원실 내 본 출장상담실을 방문한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소장 및 신청서, 답변서, 보정서 등 각종 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에게 직접 소장 등 서면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법을 전혀 모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의도에 있는 본 상담소를 안내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도왔다.

또한, 여의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본 상담소의 출장상담실에서 재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이처럼 본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원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온 상담소의 꾸준한 노력은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가정 법률 문제로 고통 받는 많은 이들에게 상담과 화해조정, 소장작성,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구조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진영 상담위원

특집 ②

202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②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 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토론발표

배 인 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1.

인지를 하기 전에 생부가 자녀의 모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인지 후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자녀의 성/본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견해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4명의 아이(초등 6학년부터 갓 돌이 지난 아이까지)가 종전 성

과 본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심판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다수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수급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한편 집안이 쓰레기더미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누구인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아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빠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자녀들 덕분에 엄마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습적으로(?) 인지를 하여 아이들의 성과 본이 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가 본인의 주거지로 아이들의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여(그래야 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나봅니다) 아이들이 전학을 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엄마의 주소지에서 살고 있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종전 성과 본의 사용을 구하는 심판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조정을 여러 번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

*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가정상담 7월호에 이 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실은데 이어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에서 볼 수 있다.

약 생부가 인지하는 경우 자녀나 자녀의 모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면 자녀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

아직 배움이 짧은 저로서는 과연 모든 사건에서 생부가 자녀의 모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도 인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동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특히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방론으로 생부가 인지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는 과연 존치해야 될 지 여쭙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1항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 남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¹⁾

가사소송법 제45조의8 개정과정에서 전 남편의 진술 청취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그 결과 임의적 절차로 개정되

었다고 합니다.²⁾ 실무상으로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함이 일반적이되,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전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가 전 남편의 주소지에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의견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겠조. 또한 전 남편이 부동의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부동의하는 전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고,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으로 사건본인과 생부 사이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³⁾ 한편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할지 여부 또한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바,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되,⁴⁾ 출생증명서의 임신기간을 계산한 결과 조산 등으로 사건본인의 임신이 혼인관계 종료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에 의해 전 남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이 나타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⁵⁾ 이에 더하여, 실무상으로는 전혼의 파탄 경위, 전남편의 폭력성 여부, 자녀의 임신 및 출산 경위, 자녀 친부와의 혼인생활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견청취서의 발송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청취가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법원마다 실무례가 달라 당사자들이 의견청취서를 보내지 않는 법원에 관할을 창설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
- 1) 이하 “정용신, 가사판결의 나비효과 - 친생추정과 후견신탁 관련 사례로 본 가사판결의 연쇄효과에 대한 검토 : 자녀의 신분권과 재산권 보호에 대안 제시의 역할을 희망하며”,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2021. 6. 14. 발표자료 12쪽 이하에서 인용
 - 2) 중앙 SUNDAY 2017. 8. 27.자 “재혼여성 괴롭히는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전남편 아이 추정’...시대착오적 민법조항 손본다” 기사 참조. <https://news.join.com/article/21877720>
 - 3) 주석민법 친족2(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69면(정용신).
 - 4) 전 남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모와 생부가 모와 전 남편의 혼인관계 종료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5) 2019 가사비송사건 업무편람, 부산가정법원(2018), 172면.



1.

발표자께서는 인지의 목적을 혼인 외의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자녀복리까지도 그 목적에 포함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생부가 혼외 자를 인지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당연히 부의 지위에서 자에 대한 친족관계, 부양, 및 상속 등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게 되며 그 파생 효과로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에서 파생하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복리 자체가 인지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혼외 자녀가 생물학적인 부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는 것으로, 인지의 목적은 생부가 자신의 혈연을 인정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만일 인지 단계에서 자녀 복리의 의미를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지에 모와 자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인지 단계에서 생부의 인지가 모와 자녀의 이익에 기여하는

지 여부를 동시에 판단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자녀와 모에게 부의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혼외 자의 부가 자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일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인지를 하고자 할 때, 모와 자녀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자녀를 부양할 여력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부 또는 자녀에게 이상적인 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는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자칫 결국 부는 자녀를 인지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나 자녀가 부를 대상으로 강제인지청구를 할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반면 부가 모와 자녀의 필요성 평가 대상이 되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상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인지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인지하여 생물적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부의 법률행위는 민법이 인정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된 것이지만, 자신의 생물학적 후손을 알고 친자관계를 설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 차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모가 자녀를 갈음하여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한다면 결국 기본적 인권의 특성을 가지는 생부의 인지의 권리가 모에 의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는 '인지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 복리가 될 것인데, 이 때 자녀복리의 개념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부의 인지의 권리가 자신의 혈통에 대한 알권리와 연계되느니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권리성이 있다면, 사인에 의한 그 제한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때문에 부의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가 정당하게 인정될 정도의 '자녀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좁게 해석되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떤지요?

3.

발표자께서는 스스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자녀(예를 들어 13세 이상)가 인지의 동의를 거부한다면, 어떤 다른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서도 인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이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인지에 동의 여부가 자녀복리를 중심으로 구성될 때, 자녀 복리 침해는 유년기 양육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의 인지로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거나 상속권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수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악의적으로 양육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지를 회피해왔던 부가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녀복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해서도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생부의 인지에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생부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동의를 인정하는 것은 인지하고자 하는 생부가 악의로 자녀의 존재를 알고도 인지를 회피했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4.

발표자께서는 임의인지제도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이 허위로 인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의 동의의 필요성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 동

의가 제도화 되어도 혈연관계가 없는 자가 스스로 생부로 인지하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의 '허위인지'가 의미하는 것은 모와 동침 사실이 없는 자가 일방적으로 모의 친자를 자신의 자로 인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와, 모와 동침사실이 있는 자가 모의 자녀와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는 경우 두 가지가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자신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3세 미만의 모의 자녀를 인지하는 자는 스스로 법률상 부로서 역할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모와의 관계에서 이미 자녀복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동의의 의사가 전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인지의 목적을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근거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것 이상으로 자녀복리를 고려하는 것까지로 포함시켜 자녀복리에 부합여부에 따라 모의 동의를 인정한다면 결국 '모의 인지 동의'가 허위인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모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아무런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알고 허위로 임의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모나 자녀의 동의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와 자녀의 동의로 생물학적 부가 아닌 자가 인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악의에 의한 허위인지에 국한해야 하지만 모가 사망한 경우 성년자녀에 대해 허위 인지가 행하여진 경우에 인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생 가능한 허위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년 자녀에 대한 인지는 인지하고자 하는 부가 자녀와의 유전적 유대를 확인하고 자녀가 미성년 시기에 인지할 수 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지 사건은 총 1,988건으로 이중 재판상 인지 사건은 175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혼인 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대부분 임의인지에 의해 성립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임의인지 제도는 모나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가장 간이한 방식으로 부자 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의인지 제도를 두지 않는 주에는 연방 양육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주에 임의인지 제도 도입을 사실상 강제한 것만 보더라도 임의인지가 혼인 외 출생자의 복리와 그의 양육비 확보에 얼마나 유용한 제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생부의 간섭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부에게 자녀의 출산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경우를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모는 생부의 임의인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혼인 외 출생자로부터 ‘부(父)를 가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발표문의 논지에 따르면 모가 임의인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생부는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임의인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부의 의지나 관심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손쉽게 포기해버려 결국 미성년 자녀의 복리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가 생부의 임의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생부도 임의인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는데, 모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런지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스스로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해야 하겠지만, 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금지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인지에는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생부의 임의인지에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여 생부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나 심판 없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모가 뒤늦게 재판상 인지를 청구한 후 생부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생부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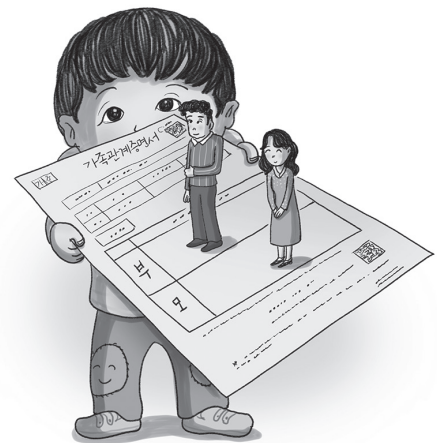
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에 관해서는 인지와 관련된 다른 소송과의 관계에서 쟁송물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가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심리해야 하는지요? 또는 ‘생부와 자녀 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해야 하는지요? 만약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부가 임의인지를 하였는데 나중에 생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모 또는 자녀는 인지자를 상대로 인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또는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모 또는 자녀는 추후 부를 상대로 재판상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쟁송의 대상을 전자로 본다면 이를 허용해야겠지만, 후자로 본다면 판결의 모순·저축을 피하기 위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의 명칭과 성격만 보면 쟁송의 대상을 전자로 보아야 할 것 같지만, 모가 임의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청구인이 생부가 아니기 때문’인 경우라면 생부와 자녀 간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한 모의 동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자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러한 난점들을 고려하면 모가 임의 인지에 동의하지 않을 때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기보다는 부가 직접 자녀를 상대로 재판에 의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세적 효력 있는 판결로써 부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4.

이상과 같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소소한 법리적·현실적 의문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만, 그 밖에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개념을 폐지하고, 독일과 같이 모든 유형의 자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친

자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인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친자법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인지에 의해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혼인 외 출생자의 숫자보다 인지의 효과 있는 출생신고에 의해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혼인 외 출생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 속에서 출생신고시 모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고민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만화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 생활」 중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차이에 따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사건번호 2019버2*** 폭행/2019버 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5회,
교육강좌 4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자조모임 4회
부부집단상담 3회 등 23회

상담기간

2019. 10. 30. ~ 2020. 7. 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21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3남(20세, 19세, 14세)이 있다. 2019년 8월 사건 당일 남편은 주거지 내에서 아내가 집에서 목사와 함께 예배드린 일을 시비하며 한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던 아내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렀으며, 아내가 이에 저항하며 안방으로 빠져나오자 뒤따라 나와 주먹으로 아내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여 양 손바닥으로 남편의 머리와 이마를 약 50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 결과 부부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6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사건 이후 남편은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지냈으며,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것이 마음 편하고 보호처분이 끝나면 이혼 여부를 결단하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갈등요인으로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꼽았다. 또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아내가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녀 이제 자신은 더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종교갈등도 꼽았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 술, 담배를 다시 하였지만 집을 나온 이후 금연을 하였다. 남편은 상담에 대한 기대로 아내와의 대화를 꼽았다.

아내는 결혼 후 남편이 10여 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조명해볼 기회로 삼겠다고 하였다. 아내에 대한 주된 상담 과정으로 자조모임과 부부집단상담을 정하였다.

부부는 부부집단상담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집을 나와 있던 남편은 상담현장에서라도 아내를 볼 수 있는 것에 반가운 내색을 하며 자신의 실수로 부부관계를 그르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다시 아내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반면, 아내는 남편과 옆자리에 앉기 싫다며 반대편에 앉았고 현재 부부관계는 0점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하였다. 부부집단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부부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집단상담은 3회 진행 후 중단되었다. 남편은 집단상담 3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부부 사이는 냉담하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남편이 거부하였고 아내는 당장 재판이혼을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하여 당분간 아내의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등 감정이 없고 절제되기 때문에 충돌 염려는 없다고 하였지만 폭력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고, 아내에게는 부부간 또는 부자간 충돌을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9버5** 폭행 대전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부부상담 5회 등 14회

상담기간

2019. 11. 20. ~ 2020. 7. 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를 2002년 중국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지금까지 사실혼으로 살고 있다. 14세인 아들은 대전에서 조모가 양육한다. 행위자는 2019년 7월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한 지인들이 피해자가 눈치를 줘서 귀가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전가정법원에서 본소예의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아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피해자는 평범하게 부부와 아들이 함께 화목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아들은 대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행위자는 건강상 이유로 대전이 아닌 시골에서 살기를

원하여 세 식구가 대전에서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갈등요인으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지나친 음주와 마작을,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생활을 구속하는 것을 꼽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음주와 마작을 인정 하였지만, 술은 마음에 댔힌 것이 많아서 일부러 취하도록 마시는 것이고, 마작은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하며 마작 하러 가는 것을 일하러 간다고 표현하였다. 오랜 기간 사실혼으로 살아온 까닭에 피해자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 및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였다. 행위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에 무관심했고 피해자의 생활태도를 조선족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남편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았다고 함) 여행비자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부부생활과 아들 양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수년 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마작을 하느라 며칠을 미루자 화가 난 행위자는 후에 피해자가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할 때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하여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 그 때 피해자는 혼인신고서를 찢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생활이 달라지겠는가 점검한 결과, 행위자는 바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절차를 알아보자고 했으나 피해자는 혼인신고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여부에 대하여 2021년 2월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 피해자는 지금은 혼인신고할 마음이 없지만 요즘 행위자가 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내면 괜찮겠다고 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마음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장은 혼인신고에 대한 욕구가 없었고, 아들 양육과 부부관계 개선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행위자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기에 향후 부부관계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부 모두 현재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였고, 부부간 대화가 많아진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보완할 점으로 남편은 아내가 음주하지 않기를, 아내는 모든 일에 부부간 대화가 더 필

요하다고 꼽았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부부의 인식이 개선되었다. 부부 관계를 점검할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 계획도 수립할 수 있었다.

사건번호 2019버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3회 등 9회

상담기간

2020. 1. 16. ~ 2020. 7. 1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지 12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9세, 7세)가 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다. 행위자는 2019년 8월 사건당일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딸을 폭행하여 딸이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폭행이 또 발생하여 두 자녀 모두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되었다. 본 사건 이후 행위자는 지역 복지관을 통하여 장애인 상담센터에 연계되어 피해자 문제를 의논한 결과, 피해자는 2019년 12월에 경기도의 장애인보호시설로 입소하였다.

행위자는 의사표현이 어눌하고, 건망증, 피부병이 있으며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와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교제할 때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수준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하며, 아이들마저 시설로 가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온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행위자에게 어느 경우에도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가족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 점검 및 재정립을 상담의 목표로 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는 분리 보호되었던 자녀들이 같은 보호시설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코로나19때문에 면회는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소식도 알지만 직접 연락은 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동을 한 것이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며 언어폭력도 폭력임을 알게 되었다. 또, 일을 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한 번도 데려간 일이 없는 등 잘해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잘 대하고 돌보겠다고 하였다.

상담종결 시점에도 피해자와 자녀들은 각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집에 오면 피해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녀 양육도 본인이 앞장서 할 것임을 다짐하였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9버3*** 특수폭행/ 2019버3*** 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5회 등 10회

상담기간

2020. 1. 21. ~ 2020. 7. 17.

상담경과

부부 모두 재혼으로 결혼한 지 20년 되었다.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고,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1녀, 아내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2남이 있으나 현재 부부만 살고 있다.

2019년 10월 사건 당일 남편은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 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칼을 위협적으로 겨누며, 의자를 휘두르는 등 특수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휘두르는 칼을 빼앗아 주방선반에 놓으려다 이를 빼앗으려는 남편의 왼손 손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특수폭행을 하여 이웃 주민의 신고로 사건처리 되었고, 부부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남편이 1주일에 4일 정도 직업훈련소에 나가 배당받는 일을 하여 부부가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이다.

아내에 의하면 남편은 결혼 5년 후부터 술을 마시면 아내를 무시하는 말과 위협 행동을 했는데, 사건 이후 남편이 조심하고 이전에 비하여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내는 부부갈등원인으로 남편의 음주문제를 꼽았는데, 남편이 일하지 않는 날은 새벽 5시경 일어나서 막걸리를 마시고(1병을 3~4시간 동안), 밥상을 차리면 그 때부터 소주를 마시는데 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일을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남편은 음주 대신에 시간을 보낼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마땅한 것도 없어서 술을 마시며, 마신 후에는 잠을 잔다고 하였다. 이에 남편에게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줄이도록 하고, 3월부터 음주문제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상담과 집단상담 등이 일시 중지되고 더욱이 남편은 3월초 고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어 그 기간 중에는 전화상담으로 부부의 안전 및 폭력재발 여부, 생활 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보행이 가능할 때 부부상담을 재개하였다. 행위자는 한 달에 두 번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데 보행이 불편하여 일을 하지 못하며 술은 마시지 않고 있었다. 환경적인 변수로 부부갈등요인이었던 남편의 음주문제요인이 해소되었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폭력대화 대신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부부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남편의 재활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데 그를 통하여 친밀감을 향

상시키도록 격려하였다. 종결상담에서 부부는 남편이 수술로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외에 다른 현안은 없다고 하였고, 이전에 비하여 대화가 많아진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폭력에 대한 부부의 경각심을 재확인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변호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일반 회원이 되신 분

조동현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가족법개정과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을 위해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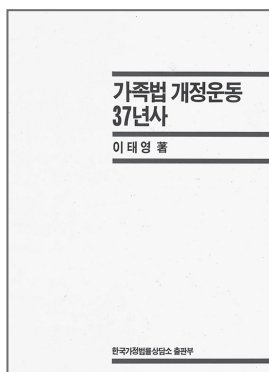
1991년 1월부터 가족법 개정을 위한 홍보 (2)

- 1992년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발간

1992년 1월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발간하였다. 이는 가정의 민주화,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진행되어왔던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의 생생한 기록서였다.

해방 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가지 쟁점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이끌어온 가족법 개정운동은 세계여성사나 입법사에서 보기 드문 인권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난 하기만 했던 이 운동의 과정을 낱알이 밝히고 있는 이 책의 출판은 운동과정 만큼이나 의미 깊은 일이었다.

808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1948년 헌법제정부부터 1989년 12월의 제3차 가족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시대를 구분하여 가족법 개정의 경위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후반기 자료편에서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 진정서, 이유서, 건의문, 개정안, 가족법 개정운동 연표, 신·구 가족법 대비표 등 그동안 반세기 가깝게 쌓아온 가족법 개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총망라하여 가족법 개정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92년 2월 2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의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가 여성계,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가족법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작업을 이어가면서 1994년에는 가정 내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통해 가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개정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기획하였으며 이후 지역이나 단체에서 상담소의 상담위원들을 초청하여 가족법강의를 청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가족법 개정운동 전반에 힘을 신게 되었다. 이처럼 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개정된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법의 생활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북미 대륙에서는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물속에서 화상을 입거나 몸에 곰팡이가 피고 있다고 한다. 맹금류들은 특성상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는데 더위를 못 견딘 아기새들이 날개도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둥지를 탈출해 떨어지고 있다고도 한다. 열대야 취침 모드의 에어컨을 다시 일반 모드로 바꿔 놓고 아침밥을 먹으며 신문을 보는 자로서 가슴 아파할 자격도 없다는 자책이 뒤통수를 친다.

이런 무더위의 여름에 지난봄에 읽었던 서늘한 소설이 생각났다. 권여선 작가의 『레몬』이다. 무서운 이야기여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삶의 불가해함 자체가 스산하고 서늘하게 느껴졌던 기억이다.

2002년 여름,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던 때, 열아홉 살이던 해연이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설은 해연의 동생인 다연의 상상으로 시작된다. 다연은 당시 형사가 사건의 용의자였던 한만우를 취조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때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었다. 해연은 한만우가 마지막으로 목격했을 때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자는 모든 면에서 한만우와 대척점에 있던 신정준이었다. 하지만 신정준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그 비극에 얽힌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진다.

소설은 이에 관해 다연, 다연의 학교선배였던 상희, 신정준의 아내가 된 태림 등의 입을 빌려 전개하며,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예컨대 “열일곱 살 6월까지도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이 삶을 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선택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35면)

그리고 “나는 궁금하다. 우리 삶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걸까. 그저 한만 남기는 세상인가. 혹시라도 살아 있다는 것, 희열과 공포가 교차하고 평온과 위험이 뒤섞이는 생명 속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을까.”(198면)

작가 권여선은 1996년 제2회 상상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해 이전까지 '안녕 추정뱅이'를 비롯한 5권 소설집과 2편 장편소설을 펴냈다. 이상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동리문학상, 동인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숙현 편집부장

레몬

권여선 지음

창비, 2020





사 실 혼 ③

- 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등 록기준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 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됩니까?

A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 등록법 제41조).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됩니 다.

- 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부모 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두 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을 남편의 자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있나요?

A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 만 두 분의 아들은 인지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밝혀 가족 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 조).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 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Q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 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 정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하는 것 을 막을 수 있나요?

A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금지가처 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 사소송법 제63조).



●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과 이상이 맞지 않아 헤어지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어머니에게 5년 전부터 치매증세가 나타나더니 지금은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빠져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 하려고 하니 은

행에서 법원의 후견인 지정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 대신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시행일 2013.7.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귀하는 어머니를 대리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미영 상담위원

스왈로우

감독 카를로 미라벨라 데이비스

출연 헤일리 베넷, 오스틴 스톨, 엘리자베스 마벨



아름다운 집, 잘생기고 부유한 남편, 곧 태어날 아기. 헌터(헤일리 베넷)의 삶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최소한 완벽해 보였다. 남편 리처드(오스틴 스톨)는 헌터를 두고 “너 무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여자예요. 제 삶의 빛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칭송한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헌터는 집안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맛있는 요리를 모양 좋게 접시에 담아내는 일에 열중한다. 그리고 완벽한 화장을 마치고 근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귀가하는 남편에게 밝게 미소짓는다. “난 정말 운이 좋아.” 그건 차라리 자신을 향한 다짐처럼 들린다. 그리고 헌터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 자리에서, 교양 넘치고 부유한 시부모로부터 자신이 완벽하게 소외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한 순간 헌터는 겹 안에 담겨 있던 열음을 소리 내어 와드득 씹어 삼킨다. 그 다

음부터 헌터는 이물질을 삼키려는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다. 유리구슬, 나사못, 옷핀, 종이...가 헌터의 목구멍을 넘어간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게 깊이 공감했던 이들이라면, 〈스왈로우〉에서 묘사하는 헌터의 ‘인스타그램머블한’ 삶에서도 지극한 현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헌터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욕실용품 판매직에 종사하다가 리처드를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었지만, 아마 리처드는 부모의 성에 차지 않는 여자와의 결혼을 스스로 밀어붙였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헌터는 자신이 ‘신데렐라’임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남편과 시부모의 기세에 짓눌려 있다. 그래서 더욱 바지런하고 깔끔하게,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애쓰고, 타인(사실상 모두가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유부녀로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영화에서 헌터가 만나는 사람들은 남편의 가족, 남편의 직장 동료, 남편이 소개한 의사, 남편이 불러들인 가사 도우미다. 남편의 관계망에 포박된 것 같은, 어쩌면 이 넓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집에 붙들린 상태인 헌터는, 임신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에서 처음으로 열음을 씹어 삼켰다.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이물질’이 몸의 내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생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헌터에게는 또 다른 이물질들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게 그다지 문

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사라든가 옷핀 등의 날카롭고 차가운 감촉이 햇바닥과 목구멍에 선사하는 불쾌한 자극을, 헌터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리처드의 말마따나, 이타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가 선물했던 자기계발서의 제목은 <기쁨을 얻는 재능>이며, 헌터는 책 속에서 “매일 의외의 것을 시도하라. 새로운 시도에 자신을 밀어붙여라”라는 구절을 눈여겨 본다.

이물질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헌터가 보는 TV 광고는, 출산한 뒤 자신의 태반을 모아 말렸다가 먹으면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태반이 뛰어난 건강보조식품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태반의 ‘건강식품’ 효과는 의학적으로는 그리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견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신부들은 내 몸에서 나간 무언가를 재섭취한다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며, 헌터는 자신만의 근거를 얻게 된다. 이물질 섭취가 단지 주체의 의지와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현상이라면, 헌터의 이식증이 유독 별난 ‘괴물’의 짓으로 여겨질 이유가 무엇인가? 시어머니도 그랬지 않은가. “마음과 몸을 다시 연결 짓도록 하자. 지금 몸이 허기져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헌터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파괴’한다는 걸 눈치챈 가족들은 격분한다. 입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지만 실상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노예를 원했던(그 여자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면서 자신이 그 여자를 구원하고 있다고 착각

했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의 행복한 굴종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헌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처방은 전혀 헌터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식증이라는 기묘한 강박을 스스로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터 자신이 내내 억누르고 감춰왔던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 외부의 이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영화의 결말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아름답고, 소름끼치며, 그만큼 또 현실적인 결론이기도 하다. 이 영화 <스왈로우>는 왓차(watcha.com)에서 스트리밍 중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하게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오 광 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계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교육장 벽에 붙어 있는 글귀입니다. 가장 크다는 26호 서예 붓으로 두껍고 정성스럽게 써진 글씨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강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방문객들도 한번 그 글귀를 바라보며 처음 상담을 받을 때의 초심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할 때는 마음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大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친족상속과 가족법에 대해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만이 가득했을 뿐,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없었습니다. 실무실습을 시작하고 많은 사례를 보고 소장을 읽었습니다. 소중한 상담소의 파일을 넘기고 전화상담을 경험했습니다. 사연과 이야기들은 실무수습생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경험과 느낌이 기대를 뛰어 나갔습니다. 여름날 무거운 이불을 덮은 듯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단어는 익숙하고 생경했습니다. 과거 세대의 오래된 설화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많은 구조시스템, 지원방안들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틈새와 허점 사이로 문제들은 자라났습니다. 줄어들었고 잘 보이지 않아 없다고 여겨왔지만, 눈을 찢고 찾아보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상담소의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의 고군분투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소는 한결같았습니다. 이태영 박사님이 상담소를 여신 이후로 상담소가 직면했던 세상의 시선과 주위의 환경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았냐? 이제 괜찮지 않냐?는 물음입니

다. 하지만 상담소는 여전히 많은 가정폭력과 가정불화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선구자의 힘으로 돌아가듯, 우리 사회의 무거운 이불을 상담소가 항상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라는 거대 담론은 누구나 바라지만 아무도 이를 수 없으리라 여깁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소소한 행복은 누구도 이를 수 있지만 아무나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금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도와 모두가 바라는 것을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8층에서 다시 초심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지 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한 사람의 기질과 행동에 주변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전해지면서 가정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던 찰나에 좋은 기회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보면서 가사사건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가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이혼이나 가정폭력 정도밖에 떠올리지 못했는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가족법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 서류 검토, 소장 작성 등 많은 활동들을 하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담 참관 활동입니다. 아직 실제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와 관련해서 상담위원 선생님들,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니 관련된 쟁점들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과제 피드백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다 그렇겠지만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감정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상담소라는 특성상 내담자의 감정에 동화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료를 검토하고 상담을 참관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담자의 진술에 과하게 몰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기억과 말은 항상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의 진술만을 가지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자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나의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야 하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상담소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힘들지는 않을지, 가족법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선생님들의 강의나 책자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려고하시고,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덕분에 2주간 즐겁게 실무수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또 좋은 기회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연을 이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인 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1학기 현소혜 교수님께서 하시는 친족법을 수강 한 후 실제 가족법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 공고를 발견하게 되어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간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가사사건 소장 작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법문서 작성을 할 수 있었고, 내방자 상담에 대한 참관

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1주차에는 가사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상담위원님들께서 가족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동시에 다양한 사건기록들도 주셔서 기록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기록들은 나의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가사사건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가족법 강의와 가정법률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책자에서 배운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가정법률상담소 내담자 상담 참관실습이었습니다. 총 세 건의 상담사건을 참관하였는데 상담위원분들께서 내담자분들의 사건들을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 보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분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등 상담위원분들의 상담을 보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법원 상담참관실습도 다양한 상담주제를 단시간에 많이 참관할 수 있어서 좋았고, 중간에 법정에 들어가서 가사사건 재판 참관하였는데,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다보니 역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하러 내방하시는 분 중에는 어려운 사정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법률구조대상자에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은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법률구조법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실무수습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상담에 대한 법률상담서를 작성하고, 양육비청구/성년후견인선임 등에 대한 법률구조의뢰서 및 소장을 직접 작성해보면서 법문서 작성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문서에 대해 상담위원분들께서 상세한 피드백을 주셔서 보완할 점과 아직 미비하게 알고 있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대는 가정법률상담소와 실무수습 협약을 맺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에 차후 성대도 협약을 맺도록 말씀드리고 후배들이 용이하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법률가가 되어 가사사건을 할 때 이번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저도 백인변호사단에 참여해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보람찬 2주였고 열정있게 지도해주신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본소는 지난 7월 20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사회로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021년 9월 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진에 대한 유임안이 의결되었다. 회의에는 김의재, 차명희, 곽배희, 조대연, 김명순 이사가 참석했다.

- **유임 이사** : 김춘봉/윤후정/박양덕/김의재/장명수/김명순/김영옥/조대연/김병후/임재연/차명희/곽배희 이사 (12인)
(관련사진 2면)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진행

2021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 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은 법률구조 서류 검토 및 법률구조의뢰서 작성, 전화 및 사이버 상담, 면접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소장 작성 등 업무와 과제 수행,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음주문제상담 및 자조모임 참관(zoom) 등 프로그램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오광준, 현지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황인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유림, 홍혜원

(관련사진 2면)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7.1. 제천가정폭력상담소

- 복미영 상담위원

7.1. 인왕중-법률구조체험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7.3. 강원대부설ATRI가정폭력 관련상담원양성교육

- 손명진 변호사

7.6.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대상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7.23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상담사 대상

가족법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 대학생 현장실습

동국대학교 현장실습(2021.07.01.~ 7.28)

- 김세희, 김효진, 이동선, 이지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2021.07.01.~ 8.31)

- 김은빈, 한해인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1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2021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면접조사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 현황 및 정책 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한국상담학회 하계연수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zoom)를 하였다.

2021년 7월 상담통계

총 건수 5,419

법률상담 (4,700)

면접	전화	인터넷
946	3,676	78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44	70	105

• 인터넷 정보 이용 20,021

2021년 7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419건이었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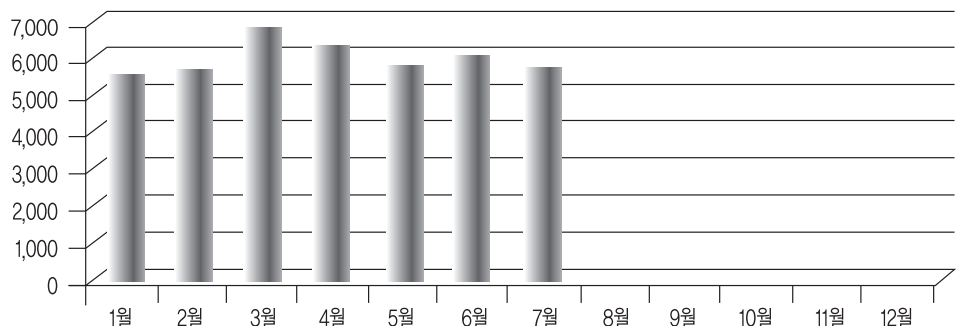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700건(86.7%), 화해조정 544건(10.1%), 소장 등 서류작성 70건(1.3%), 소송구조 105건(1.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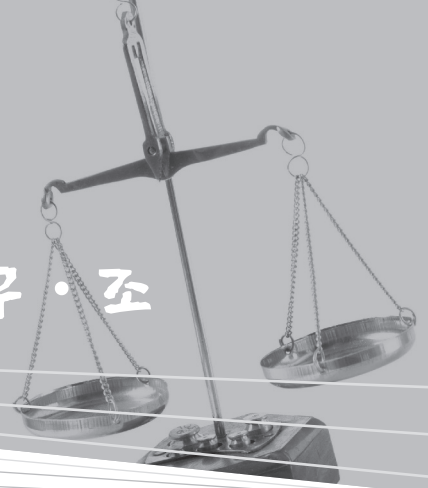
법률상담 4,70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6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1%→5.4%), 위자료·재산분할(8.4%→9.7%), 친생자존부(2.5%→2.8%), 부양(1.5%→1.7%), 가족관계등록부(3.1%→3.6%), 친양자(0.7%→1.0%), 개명(0.4%→0.5%), 성년후견(2.7%→3.0%), 가사절차

(5.4%→7.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기타(0.3%→0.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간통(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70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46건(20.1%), 전화상담 3,676건(78.2%), 인터넷상담 78건(1.7%)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924

담당 : 이정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1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가정불화가 심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을 힘겹게 양육하였다. 그렇게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독립시킨 신청인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치킨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부족한 사업자금은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충당하였다. 하지만 미흡한 배달체계 등 운영기술부족으로 다수의 경쟁업체로부터 밀려나 적자가 지속되었고, 결국 2년여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취직을 하여 채무를 상환해보려 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취직이 어려웠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6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가깝스로 생계유지 중인 신청인은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6. 8.)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를 폭행 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률구조 2021-1-40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반소원고, 여, 38세)와 원고(반소피고, 남, 34세)는 201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7세)을 두고 있다. 2015년경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가 원고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자, 화가 난 원고는 임신 중이었던 피고를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 달려 겨우 원고의 폭행을 멈출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7월경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빠져 원고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죽비로 피고의 전신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 외에도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경제적 무능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피고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홀로 생계와 양육을 도맡아야 했다. 원고는 2020년 12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피고는 병원치료를 위해 친정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부산가정법원 2021. 4. 2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1. 6. 3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고소한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

4. 원고(반소피고)는 이 법원 2020즈단00000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가. 2021. 4.부터 2021. 6.까지는 월 500,000원,

나. 2021. 7.부터 2021. 12.까지는 월 1,000,000원,

다. 202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는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가. 일시

1)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7:00까지

2)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하는 6박 7일

3) 추석 및 구정 연휴가 포함된 공휴일 중 1박 2일

나. 장소 및 방법 :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8.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9.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다음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윤길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소회입니다.

상담소를 통해 법률구조 받으신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상담소 사건을 진행할 때면 유리한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 즉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특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판결을 통해 얼마의 금액이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이 신용불량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마땅히 강제 집행을 재산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고민했고, 사건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실제로도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연대보증과 생활비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12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건설회사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회사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연대보증인 이었던 신청인이 대출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경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건설직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을 영위해왔으나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고관절 통증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다 보니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졌으나 신청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채무지급 불능상태에 빠졌다. 신청인은 작년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욱 심해져

일용근로마저 못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앓기 시작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약 8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 중이며, 해당 소득만으로는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6.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평생 가정 경제를 책임진 아내를 무시하고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8-248, 2020-402, 2021-1-109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6세)와 피고(남, 71세)는 1984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그 사이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시부모까지 봉양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도 책임져야 했다. 원고는 식당일, 환경미화, 요양보호사, 산모돌보미, 작업장 인부, 공장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원고의 소득활동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결국 집도 잃게 되었다. 원고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생활비로 인한 채무가 계속하여 늘어났지만 피고는 소득활동은커녕 의처증으로 원고가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오히려 원고의 소득활동을 방해하였다. 뿐만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폭언을 일삼으며 원고를 무시하였고, 원고를 몹시 괴롭히기도 하였다. 2018년 3월경부터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시작해 1인실로 격리된 남자 환자를 간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관념이 희박하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데리러 갈 테니 당장 병원에서 나오라고 이야기 하

였고, 이에 원고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원고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원고가 여러 차례 고속 버스를 갈아타고 귀가한 후 외출을 위하여 자동차 열쇠를 챙기자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달려들어 원고의 뺨을 때렸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무책임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며 피고와의 혼인관계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과 : *2018-248(제1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0-402(제2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2. 17.)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1-1-109(제3심) :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21. 6. 24.)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4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83세)은 약 20년 전, 부동산 사장의 회유로 7천만 원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 공사가 중단되었다. 완공이 되면 신청인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상가분양을 받기로 하였지만 무려 10여 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후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손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당뇨와 당뇨합병증, 허리디스크 등을 앓으면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고, 결국 거주 중이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이 충격으로 배우자는 지병이 심해져 4년여 만에 사망하였고, 고령인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경 신청인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최고서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과거 분양사기 사건에서 신청인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어있어 보증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었다. 총 채무액은 5억 원에 달하여,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에 의존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었다. 현재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7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건설업을 하던 전배우자 때문에 한때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이혼 후 2014년경부터 쿼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를 완납하였다. 하지만 2017년경 시작된 경영난으로 1년이 넘게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좀처럼 경영난이 해결되지 않고 적자가 더욱 심해져 2018년경

폐업을 결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마트에서 근무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청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월 변제를 하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이 폐지되고 말았다. 현재 신청인은 미성년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변제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65세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21-1-11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10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1(여, 68세), 피고2(여, 66세)의 모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며 원고 전배우자의 혼외자들이다. 원고에게는 친생자인 딸이 있는데 최근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딸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친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그런데 위 출생확인신청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딸을 원고의 자녀로 등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자녀로 등재된 피고1은 원고의 친딸과 이름이 같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에 의해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2는 친딸과 출생일이 6개월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친딸은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생활하여 왔기에 이름을 변경하여 출생신고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원고의 친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과 주거혜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신장수술을 오랫동안 미루어 왔기에 현재 시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출생신고 미비로 인해 의료급여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친딸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21. 6. 25)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

법률구조 2021-1-196

담당 : 이원호 변호사

사건명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내용 : 신청인(여, 45세)은 피신청인(남, 46세)과의 사이에 사건본인(여, 6세)을 두었으나 2017년 9월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다던 다단계회사는 피신청인의 코드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고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법률구조를 통하여 재산조회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던 여러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예금 액수가 모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계좌에 추심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4.)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은행에 한하여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202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남, 35세)와 채무자(여, 26세)는 2017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으나, 2019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현재까지 100여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였다. 양육비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자 채권자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7.)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2021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8월 휴강, 9월 13일, 9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 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8월은 휴강)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 강 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일 시	강 의 제 목
9월 23일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10월 28일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11월 25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9월 9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1년 8월 / 10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1년 8월/10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슬기로운 청렴생활 - 원칙, 정직, 실천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